

근로자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 작성을 위한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건강검진 검사항목별 판정기준 전환표

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「일반건강진단」을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의한 건강검진으로 갈음하는 경우, 다음의 <검사항목별 판정기준 전환표>에서 제안하는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.

목표질환	검사항목	단위	검진항목별 판정기준					
			국민건강보험법검진	정상A	정상B	질환의심		유질환자
			근로자건강진단	정상A		요관찰자C	유소견자D ₂	유소견자D ₂
폐결핵 및 기타 흉부질환	흉부 방사선촬영		국민건강보험법검진	정상	비활동성 폐결핵	정상 및 비활동성 폐결핵 이외의 자 (사진불량, 미촬영 등은 제외)		폐결핵 약물치료 중
			근로자건강진단	정상 / 비활동성폐결핵		정상 및 비활동성 폐결핵 이외의 자	*	
고혈압	혈압 (수축기/이완기)	mmHg	국민건강보험법검진	120 미만 이며 80 미만	120-139 또는 80-89	140 이상 또는 90 이상		고혈압 약물치료 중
			근로자건강진단	140 미만 이며 90 미만		140 이상 또는 90 이상	*	
당뇨	공복 혈당	mg/dL	국민건강보험법검진	100 미만	100-125	126 이상		당뇨 약물치료 중
			근로자건강진단	100-125		126 이상	*	
이상 지질혈증	총 콜레스테롤		국민건강보험법검진	200 미만	200-239	240 이상		이상지질혈증 약물치료 중
			근로자건강진단	240 미만		240 이상	*	
	HDL 콜레스테롤		국민건강보험법검진	60 이상	40-59	40 미만		
			근로자건강진단	40 이상		40 미만	*	
	트리글리 세라이드		국민건강보험법검진	150 미만	150-199	200 이상		
			근로자건강진단	200 미만		200 이상	*	
	LDL 콜레스테롤 ¹⁾		국민건강보험법검진	130 미만	130-159	160 이상		
			근로자건강진단	160 미만		160 이상	*	

* : 유소견자D₂의 권고기준이 없는 항목은 검진기관별로 별도 지정한 기준으로 D₂판정을 줄 수 있다. 판정의사는 검사항목별 검사 결과, 질환의 정도가 심하여 신속한 치료 등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D₂판정을 하여야 한다.

¹⁾ : LDL 콜레스테롤의 경우 TG 400 mg/dL 이상인 경우 계산식을 이용한 결과값은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제시하거나 판정하지 않는다.

근로자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 작성을 위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건강검진 검사항목별 판정기준 전환표

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「일반건강진단」을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의한 건강검진으로 같음하는 경우, 다음의 <검사항목별 판정기준 전환표>에서 제안하는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.

목표질환	검사항목	단위	1차검진					2차검진		
			국민건강보험법검진	정상A	정상B	질환의심		유질환자	정상	
			근로자건강진단	정상A		요관찰자C	유소견자D ₂	유소견자D ₂	비고	
빈혈	혈색소	g/dL	국민건강보험법검진	남 13.0-16.5 여 12.0-15.5	12.0-12.9 10.0-11.9	남 12.0 미만 여 10.0 미만		-	-	
			근로자건강진단	남 12.0-16.5 여 10.0-15.5		남 12.0 미만 여 10.0 미만	*	-	-	
청력	손음 청력검사	dB	국민건강보험법검진	40 dB 미만		40 dB 이상		-	-	
			근로자건강진단			40 dB 이상	*	-	-	
간장질환	AST (SGOT)	U/L	국민건강보험법검진	40 이하	41-50	51 이상		-	-	
			근로자건강진단	50 이하		51 이상	*	-	-	
	ALT (SGPT)		국민건강보험법검진	35 이하	36-45	46 이상		-	-	
			근로자건강진단	45 이하		46 이상	*	-	-	
	γ-GTP		국민건강보험법검진	남 11-63 여 8-35	남 64-77 여 36-45	남 78 이상 여 46 이상		-	-	
			근로자건강진단	남 78 미만 여 46 미만		남 78 이상 여 46 이상	*	-	-	
신장질환	요단백	국민건강보험법검진	음성(-)	약양성(±)	양성(+1) 이상		-	-		
		근로자건강진단	음성(-) 및 약양성(±)		양성(+1) 이상	*	-	-		
	혈청 크레아티닌	국민건강보험법검진	1.5 이하		1.5 초과		-	-		
		근로자건강진단	1.5 이하		1.5 초과	*	-	-		
비만	키, 몸무게	BMI (kg/m ²)	국민건강보험법검진	18.5-24.9	25-29.9 18.5 미만	30 이상		-	-	
			근로자건강진단	18.5-29.9		30 이상	*	-	-	
	허리둘레		국민건강보험법검진	남 90 미만 여 85 미만		남 90 이상 여 85 이상		-	-	
			근로자건강진단	남 90 미만 여 85 미만		남 90 이상 여 85 이상	*	-	-	
	※표준체중에 의한 비만 판정		%	국민건강보험법검진	-	-	-	-	-	-
				근로자건강진단	90 이상-120 미만		120 이상	*	-	-

* : 유소견자D₂의 권고기준이 없는 항목은 검진기관별로 별도 지정한 기준으로 D₂판정을 줄 수 있다. 판정의사는 검사항목별 검사 결과, 질환의 정도가 심하여 신속한 치료 등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D₂판정을 하여야 한다.

※ 표준체중에 의한 비만 판정 : 「국민건강보험법」 건강검진 수행 시에는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 작성에 활용하지 않는다.



더 자세한 사항은
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
→ 자료마당
→ 통합자료실에서 <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>으로 검색하세요.